

「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」 추진계획

◇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와 노동·작업환경, 소방시설 개선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「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」의 계획 보고임.

1 사업 개요

- 사업명 :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
- 추진근거 :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
- 사업기간 : 2027년 1월 ~ 12월(단년도 계속사업)
- 사업예산 : 수요조사 결과 제출 후, 경기도 최종 심의 확정
※ '26년 예산 1,241백만원(도 567, 시 674), 예산 상황에 따라 편성 예정
- 지원대상 : 관내 중소기업(제조업)
- 주요 지원내용

(단위 : 백만원)

지원 유형	지 원 대 상	지원 한도	지 원 내 용
기반 시설	중소기업 밀집지역 (제조업 3개사 이상)	500 (도 200, 시 300)	도로포장, 상하수도, 소교량, 우수관 정비 등 ▶ 매칭비율 : 도 40%, 시 60%, 기업 자부담 없음
노동 환경	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(제조업)	40 (도 12 시 28)	기숙사, 식당, 화장실, 샤워실, 휴게공간 등 ▶ 매칭비율 : 지자체 70%~80%(도 30%, 시 70%)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(20%~30% 이상)
소방 안전	작업 환경	20 (도 6 시 14)	작업공간(바닥, 천장 등), 작업대, 적재대, 환기·집진장치, 컨베이어 작업대 등 ▶ 매칭비율 : 지자체 70%~80%(도 30%, 시 70%)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(20%~30% 이상)
	소방 시설	70 (도 21 시 49)	경보설비, 무선화재감지기, 노후 전기배선 교체, 자동확산 소화기, 방화벽, 스프링클러, 피난설비, 위험물(리튬 등) 보관장소 설치 등 ▶ 매칭비율 : 지자체 70%~80%(도 30%, 시 70%)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(20%~30% 이상)

2

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변경사항

□ 2026년 추진현황

- 기반시설 개선(시설비) : 538백만원(도 215, 시 323)
 - 대덕면 삼암마을 진출입로 개선사업(233백만원) 등 4건 추진 중
- 기업환경 개선사업(민간자본보조) : 702백만원(도 351, 시 351)
 - 주식회사 필아코리아 작업환경 개선(20백만원) 등 총 40건 추진 중

□ 2027년 변경사항

- 도비보조율 하향: 현행 보조율 50%(도 50, 시 50) → 30% (도 30, 시 70)

< '26년 도·시비 분담율 >				< '27년 도·시비 분담율 >			
분야	①기반시설	②노동복지	③소방안전	분야	①기반시설	②노동복지	③소방안전
		노동	작업+소방			노동	작업+소방
비율	도 40, 시 60	도 50, 시 50 / 자부담 별도		비율	도 40, 시 60	도 30, 시 70 / 자부담 별도	

※ 사업비 예시

(단위 : 천원)

세부사업명	사업규모(단위)	사업비				
		계 (100%)	지자체 부담			자부담 (20%)
			소계 (80%)	도비 (30%)	시군비 (70%)	
바닥도장공사	3mm * 485m ²	25,000	20,000	6,000	14,000	5,000

- 선정 평가 하한 기준 도입: 사업 선정 시, 40점 미만 사업 미선정
 - 사업 선정 시 하한 점수(40점) 기준을 적용: 기준 미달 사업 선정 방지, 지원대상의 적정성 및 심사의 객관성·공정성 강화
- 중소기업 심사기준 ‘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’ 가점 추가
 - ‘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’에 평가표상 가점 3점을 부여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촉진
 - ※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공고일 기준 유효 인증서(경기도 발급) 확인
 - ※ 기존 ‘산업재해 미발생기업’과는 중복 가점 미부여

3

추진 일정

단 계	추진항목	추진내용	
사업계획	추진계획 수립	· 「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」 추진계획 수립	
	'26. 8월		
참가기업 수요조사	참가기업 수요조사	· 「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」 수요조사 - 접수기간 : '26. 8. 20(목) ~ 9. 8.(화) [20일간] - 접수방법 : 안성시 첨단산업과(기업지원팀) 또는 읍·면·동(산업팀) 방문접수	
	'26. 8월 ~ 9월		
	평가 시	서류검토	· 평가표(심사기준)를 통한 우선순위 선정 등
		'26. 9. 15限	
		현장실사	
'26. 9. 28限			
대상사업 확정	선정보고	· 적합기업 선정보고(시→도)	
	'26. 10. 2限		
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	대상사업 확정	· '경기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' 심의 및 지원대상 확정 통보 (도→시)	
	'26. 12월 ~ '27. 1월		
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	보조금 교부결정	· 「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」 사업대상자 통보 및 보조금 교부결정	
	'27. 2월 ~ 3월		
	사업추진	사업추진	· 기반시설 개선사업 및 개별기업 사업추진
'27. 3월 ~ 11월			
사업완료보고	사업완료보고	· 개별기업별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(개별기업→시)	
	'27. 3월 ~ 12월		
사업성과 및 정산보고	사업성과 및 정산보고	· 최종사업성과 및 정산보고(시→도)	
	'28. 2월		

4

분야별 세부 지원기준

1 기본시설

구 분	세 부 사 항
지원대상	관내 소재 중소기업 밀집지역 (제조업 3개사 이상)
지원내용	도로 확·포장, 상·하수도, 소교량, 우수관 정비
지원요건	■ 사업 시급성, 주변환경, 시 재정여건, 과거 지원실적 등 감안 ■ 제조업 3개 사 이상 참여, 다수기업 우선 반영
재원비율	도 40%, 시비 60% (2027년 시·군 차등보조율 적용)
지원한도	도비 2억원, 시비 3억원 이내 (총사업비 5억원 이내)
지원우대	■ 수혜효과(수혜기업, 종업원 등) 및 사업 타당성 효과가 큰 사업 ■ 주변 이해관계인 등 사전 협의·동의가 완료된 사업 ■ 현지실태조사 시점에서 전년도 사업 집행률이 높은 시·군 사업 ■ 수혜기업 중 여성기업 비율이 20% 이상 또는 수혜 여성 종업원 비율이 전체의 20%이상인 사업 ■ 수혜기업 중 뿌리기업¹⁾ 비율이 20% 이상인 사업 ■ 수혜기업 중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비율 10% 이상인 사업
제외대상	■ 타 사업에서 전문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■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, 사용 승낙 등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■ 단위 사업 당 총사업비 5억원 초과 사업 및 연차별 추진사업 ■ 지방 및 광역상수도 보급 지역의 상수도 설치 신청 사업 ■ 시설이 양호하여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 ■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■ 최근 5년간 '기업환경 개선사업' 지원내역(기본시설)이 있는 경우

1) 뿌리기업 : 주조, 금형, 소성가공, 용접, 표면처리,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의 기업

2 노동복지(노동환경)

구 분	세 부 사 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대상	관내 소재 중·소기업 (제조업)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내용	기숙사, 휴게실, 식당, 화장실, 샤워실, 세탁실, 정화조 등의 설치 및 개·보수 ※ 지원허용 : 보일러,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 ※ 지원제외 : ① TV, 냉장고, 선풍기, 에어컨, 식탁 등의 집기류, 소모품류 ②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, 임차료, 이자 등 해당 시설·설비 개·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《 기숙사 신축 지원 내용 》 - 지원대상: 열악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장부지 내 기숙사 건축 시 지원 ※ 건폐율 용적률 등 저촉 관련 사전협의 - 제외대상: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경우, 공장부지 외 지역 기숙사 신축, 공사추진 중인 경우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요건	■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(휴·폐업체 제외) ■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 ■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재원비율	■ 기업 순이익별(전년도 당기) 차등 보조 (자부담 20%~30% 이상) <table><tr><th rowspan="3">순이익 구간</th><th colspan="4">재원 비율(%)</th></tr><tr><th colspan="3">지자체 부담</th><th rowspan="2">기업 자부담</th></tr><tr><th>소계</th><th>도</th><th>시군</th></tr><tr><td>5천만원 이하</td><td>80</td><td>30</td><td>70</td><td>20</td></tr><tr><td>5천만원 초과 ~ 2.5억원 이하</td><td>75</td><td>30</td><td>70</td><td>25</td></tr><tr><td>2.5억원 초과</td><td>70</td><td>30</td><td>70</td><td>30</td></tr></table>	순이익 구간	재원 비율(%)				지자체 부담			기업 자부담	소계	도	시군	5천만원 이하	80	30	70	20	5천만원 초과 ~ 2.5억원 이하	75	30	70	25	2.5억원 초과	70	30	70	30
순이익 구간	재원 비율(%)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지자체 부담			기업 자부담																								
	소계	도	시군																									
5천만원 이하	80	30	70	20																								
5천만원 초과 ~ 2.5억원 이하	75	30	70	25																								
2.5억원 초과	70	30	70	30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한도	■ 지자체 부담 40백만원(도비 12백만원, 시군비 28백만원) 이내 ※ 기숙사 신축 → 도비 30백만원, 시군비 70백만원 이내 ※ 총사업비 제한 없음 (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)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우대	■ 뿌리기업,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■ 기업 RE100 참여기업 및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■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(상시노동자 50인 이상 기업 중 3.1% 이상 장애인 고용) ■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% 이상인 기업 ■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■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(공모기준일 최근 3년 사업장 산업재해를 조희결과서(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) 상 무재해인 경우 또는 (신규)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(공모일 기준 「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」에 따라 인증기간이 유효한 경우)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외대상	■ 타 유사사업(정부, 경기도, 시 등)과 중복지원 ■ 임대·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·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■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■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■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■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(증축포함)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■ 최근 5년간 '기업환경 개선사업' 지원내역(노동·작업)이 있는 기업 ■ 시설이 양호하여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 ■ 세금(국세, 지방세) 체납 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

3 소방안전(작업환경)

구 분	세 부 사 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대상	관내 소재 소기업 (제조업)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내용	작업공간 내부(바닥, 천장, 벽면, 창호 등) 개보수,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, 적재대, 작업대, 환기·집진·공기순환장치(산업용) 설치, LED조명 설치, 컨베이어 작업대 ※ 지원제외 : 소모품, 생산공정을 직접 수행하는 기계·설비, 생산설비 부착·결합 작업대(주문제작 등), 냉난방기, 작업환경 개선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일반 사무·생활·청소용 비품 및 장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요건	■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(휴·폐업체 제외) ■ 총 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 이상 사업 ■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소기업의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100억원 이하 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재원비율	■ 기업 순이익별(전년도 당기) 차등 보조 (자부담20%~30% 이상) <table><tr><th rowspan="3">순이익 구간</th><th colspan="4">재원 비율(%)</th></tr><tr><th colspan="3">지자체 부담</th><th rowspan="2">기업 자부담</th></tr><tr><th>소계</th><th>도</th><th>시군</th></tr><tr><td>5천만원 이하</td><td>80</td><td>30</td><td>70</td><td>20</td></tr><tr><td>5천만원 초과 ~ 2.5억원 이하</td><td>75</td><td>30</td><td>70</td><td>25</td></tr><tr><td>2.5억원 초과</td><td>70</td><td>30</td><td>70</td><td>30</td></tr></table>	순이익 구간	재원 비율(%)				지자체 부담			기업 자부담	소계	도	시군	5천만원 이하	80	30	70	20	5천만원 초과 ~ 2.5억원 이하	75	30	70	25	2.5억원 초과	70	30	70	30
순이익 구간	재원 비율(%)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지자체 부담			기업 자부담																								
	소계	도	시군																									
5천만원 이하	80	30	70	20																								
5천만원 초과 ~ 2.5억원 이하	75	30	70	25																								
2.5억원 초과	70	30	70	30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한도	■ 지자체 부담 20백만원(도비 6백만원, 시군비 14백만원)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우대	■ 뿌리기업,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■ 기업 RE100 참여기업 및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■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(상시노동자 50인 이상 기업 중 3.1% 이상 장애인 고용) ■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% 이상인 기업 ■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■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(공모기준일 최근 3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 (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) 상 무재해인 경우 또는 (신규)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(공모일 기준 「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」에 따라 인증기간이 유효한 경우)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외대상	■ 타 유사사업(정부, 경기도, 시 등)과 중복지원 ■ 임대·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·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■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■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■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(증축포함)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■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■ 최근 5년간 '기업환경 개선사업' 지원내역(노동·작업)이 있는 기업 ■ 세금(국세, 지방세) 체납 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

4 소방안전(소방시설)

구 분	세 부 사 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대상	■ 관내 소재 중·소기업 (제조업)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내용	■ 경보설비, 무선화재감지기, 자동화재탐지설비, 방화벽, 스프링클러, 피난설비, 자동확산 소화기 등 자체 소방시설 설치·개보수 ■ 위험물(리튬 등) 보관 장소 격벽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 ■ 노후 전기배선 교체(작업공간만 해당: 연구실, 사무실 제외) 등 ※ 지원제외 : 설치 시설이 아닌 소화기 등 이동이 가능한 기구 (예) 일반 소화기, 간이소화용구 등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요건	■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(휴·폐업체 제외) ■ 총 사업비가 최소 2백만원 이상 사업 ■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재원비율	■ 기업 순이익별(전년도 당기) 차등 보조 (자부담 20%~30% 이상) <table><tr><th rowspan="3">순이익 구간</th><th colspan="4">재원 비율(%)</th></tr><tr><th colspan="3">지자체 부담</th><th rowspan="2">기업 자부담</th></tr><tr><th>소계</th><th>도</th><th>시군</th></tr><tr><td>5천만원 이하</td><td>80</td><td>30</td><td>70</td><td>20</td></tr><tr><td>5천만원 초과 ~ 2.5억원 이하</td><td>75</td><td>30</td><td>70</td><td>25</td></tr><tr><td>2.5억원 초과</td><td>70</td><td>30</td><td>70</td><td>30</td></tr></table>	순이익 구간	재원 비율(%)				지자체 부담			기업 자부담	소계	도	시군	5천만원 이하	80	30	70	20	5천만원 초과 ~ 2.5억원 이하	75	30	70	25	2.5억원 초과	70	30	70	30
순이익 구간	재원 비율(%)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지자체 부담			기업 자부담																								
	소계	도	시군																									
5천만원 이하	80	30	70	20																								
5천만원 초과 ~ 2.5억원 이하	75	30	70	25																								
2.5억원 초과	70	30	70	30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한도	■ 지자체 부담 70백만원(도비 21백만원, 시군비 49백만원)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우대	■ 뿌리기업,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■ 기업 RE100 참여기업 및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■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(상시노동자 50인 이상 기업 중 3.1% 이상 장애인 고용) ■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% 이상인 기업 ■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(공모기준일 최근 3년 사업장 산업재해를 조회결과서 (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) 상 무재해인 경우 또는 (신규)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(공모일 기준 「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」에 따라 인증기간이 유효한 경우)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외대상	■ 타 유사사업(정부, 경기도, 시 등)과 중복지원 ■ 임대·전대의 경우 건물주·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■ 시설이 양호하여 개·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■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■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■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(증축포함)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■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■ 최근 5년간 '기업환경 개선사업' 지원내역(소방시설)이 있는 기업 ■ 세금(국세, 지방세) 체납 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○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조사 철저

- 사업계획서 미흡, 지원 내용과 무관한 사업 포함 시 선정 불가
- 사업별 심사점수에 따른 우선순위 반영(선정심의 반영)

■ 사업 선정 시 유의사항

① 최근 5년(2022년~2026년) 사업 수혜기업 지원 불가

- 분야 관계없이 지원이력 있는 기업 지원 불가
(소방시설 분야 이력에서 타 분야 지원은 가능, 소방→소방 불가)
- (예) 2022년 A회사 화장실 개보수 지원 → 최근 5년 수혜기업으로 사업신청 불가
2021년 B회사 화장실 개보수 지원 → 5년 경과하여 사업신청 가능
- 과거 지원이력에 따라 기업 우선순위 선정
(예) 과거 지원이력 없는 기업 1순위 선정, 10년전 지원기업 2순위, 9년전 3순위... 등

② 화재위험 장소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우선 선정③ 예산현황 및 사업추진 일정 등 면밀히 고려하여 사업 선정

- 예산 확보 불가로 인한 이월 방지, 가능한 **2027년 10월 이전 완료 가능 사업 선정**

○ 사업대상의 인허가, 신고 및 관계기관 협의 가능 여부 사전 확인

- 불법건축물 여부, 공장등록 여부(공장면적 500㎡ 이상일 경우)
- 도로 확포장, 상하수도 설치 시 토지 사용 동의
- 기숙사 신축, 증축 및 공장 개보수 관련 건폐율, 용적율, 건축물 용도

○ 개별업체의 사업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

- 단일사업 분야 내에서 복수 지원 가능
- 소방시설 분야는 타 분야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
(예) ① 기숙사(노동환경), 바닥도장(작업환경) 지원 불가
② 기숙사(노동환경), 화장실 개보수(노동환경) 지원 가능
③ 바닥도장(작업환경), 자동화재탐지설비(소방시설) 지원 가능

○ 예산 집행 등 기타사항

- **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이 부담**(노동·작업환경, 소방시설)
- 자부담금은 사업 착수 전까지 확보 증빙서류(통장사본 등) 확인
- 집행 시 관리감독 및 정산 철저
- 다음의 경우 **대체사업 발굴하여 도 변경승인 신청**
 - 사업포기 및 지원내용 변경 발생 시(구체적인 사유 명시)
 - 선정된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 진행을 지연할 경우
- **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한 기업은 향후 2년간 사업 지원 불가**